

< 디자인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

□ **세법상 중소기업의 대상범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001.12.31 개정)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전문디자인업 등

□ **조세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이 2003년 말까지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산입년도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산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이 2006년 말까지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경우	· 당해 투자금액의 3%를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연도에 투자한 금액 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3, 동법시행령 제4조의3)	중소기업이 2007년 말까지 중기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구매한 금액의 7%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에서 공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2006년 말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 50%감면 · 창업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 수도권 안에서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 지역 30%)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내국인이 2006년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준비금의 3%를 손금산입후 3년후에 3년에 걸쳐 익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내국인이 2006년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 2가지 방법 중 선택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2)	내국인이 2005년말까지 해외훈련 등을 위한 비용중 인턴사원에게 발생되는 비용	· 당해비용의 7%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간 소득세 면제 - 외국 디자인산업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 동분야 3년 이상 종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도 모를 위해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당해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 사업용 자산 취득(중고품 투자 제외)을 위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단, 2003년 7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94조)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을 2006년 12월말까지 매입, 증축, 개축한 경우	·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토지매입대금 제외)의 7%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 (소득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34조)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 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채권 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 경비 또는 손금산입 ·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
퇴직 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또는 손금산입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 급여충당금 누적액이 재직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추계액의 40%한도로 충당금 설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인세법 제72조 동법시행령110조)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한도에서 환급